



# 상 고 장

- 원고, 상 고 인
1. 김지수
  2. 강정환
  3. 한영선
  4. 정윤수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, 김진  
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의4 대영빌딩 203호  
 與民合同法律事務所

피고, 피상고인            대한민국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최경원

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2001나25718 손해배상(기)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01. 12. 6. 선고한 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,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.

## 항소심 판결 주문의 표시

1. 원심 판결 중 위 원고 김지수, 강정환, 한영선, 정윤수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.
2. 피고의 원고 서승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.
3. 원고 김지수, 강정환, 한영선, 정윤수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, 피고의 원고 서승연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(상고인들 대리인은 위 판결의 정본을 2001. 12. 13. 송달받았습니다)

## 상 고 취 지

원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상 고 이 유

추후 제출하겠습니다.

첨 부 서 류

- 1. 상고장 부분 1통
- 1. 위임장 1통
- 1. 납부서 1통

2001. 12.

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

변호사 김 선 수



변호사 김 진



대법원 귀중